

제145회(임시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부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목 차

1.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투표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면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투표조례안 검토보고서	18면
2. 서울특별시종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4면
○서울특별시종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7면
3.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0면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3면
4.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6면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9면
5.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1면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7면
6.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1면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4면
7.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59면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투표조례안

의안 번호	1049
----------	------

제출년월일 : 2004.10.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법(2004.1.29)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 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하여 주민투표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 일 현재 서울특별시종로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 자격을 갖춘 사람(안 제3조)
- 나. 주민투표의 대상(안 제4조) :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분합에 관한 사항
 2. 구 및 동의 사무소 소재지 설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구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5.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
- 다. 투표청구 주민 수 :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함.(안 제5조)
- 라. 서명요청 기간 :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함.(안 제7조)
- 마. 서명보정 기간 : 법 제12조제7항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함.(안 제11조)
- 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안 제12조)
-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를 둬
 -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위촉직 위원으로 함.

사. 투표운동의 제한(안 제15조)

-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됨.
-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 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이를 할 수 없음.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주민투표법
- 나. 예산조치 : 2005년 예산반영 예정
- 다. 기 타
 - 1)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 2) 제정안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투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책무) ①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서울특별시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분합에 관한 사항
2. 구 및 동의 사무소 소재지 설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구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 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 5.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 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포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위촉직 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심의회는 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4. 구 소속 4급 이상 직원

⑤구 소속직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심의회 운영) ①심의회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투표담당과장으로 한다.

⑥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처리기간) ①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 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 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6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구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2호서식 】

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종 로 구 청 장 (인)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3호서식 】

서 명 요 청 권 위 임 신 고 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수 입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 관한표준조례안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 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종 로 구 청 장 귀하</p> <p>※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p> <p>※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p>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4호서식 】

서 명 요 청 권 위 임 신 고 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수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관한표준조례안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 하였으며, 수입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종 로 구 청 장 (인)</p>			
<p>※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p> <p>※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p>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자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한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한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한다.

【 별지 제7호서식 】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p>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p> <p>종 로 구 청 장 귀하</p>			
<p>※ 첨부서류 : 증빙자료</p> <p>참고 :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p>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